

[일련번호 : 75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 공고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산림보호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산림보호법」 제25조(산림병해충 방제)에 따르면 “예찰·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,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, 방제의 방법과 내용, 그 밖의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,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「산림보호법」 제25조에서 규정한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,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, 방제방법과 내용 등 필수 공고사항을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아 방제업무 처리 절차를

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 공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